

2021년 It's PSAT REAL

전국모의고사

- 상황판단 이의제기 정리집 -

제2회 모의고사(2.20시행분)

(2020. 2. 26)

한림법학원
willbes.net

< 상황판단 이의제기 정리 >

◇ 문제 3번

▶ 이의제기내용

제 2회 전국모의고사 상황판단 3번 ㄷ선지 이의제기입니다.

3번의 법조문에서 '벌금 또는 추징금'의 예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ㄷ선지에서는 '벌금 또는 과징금'의 예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징금과 추징금은 법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또한 법조문이나 추가로 제시되어 있는 각주 어느 곳에서도 과징금과 추징금이 같은 개념이라거나

과징금이 추징금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ㄷ선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의제기내용

2회 상황판단 3문의 ㄷ선지 이의제기입니다.

본문상 과징금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고

2조에 추징금이라는 단어만 등장합니다.

ㄷ선지에서는 과징금을 서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의제기합니다.

▶ 이의제기내용

▷▶ 이의제기 답변

출제의도와는 달리, <보기 ㄷ>에서 잘못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징금을 과징금으로 표현한 제 실수이며 타당한 이의제기입니다.

최선을 다해 모의고사에 임하셨을텐데,

불편을 드려 무척 송구합니다.

남은 기간 건강하게 컨디션 조절 잘 하시어

올해 꼭 최종합격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답변경여부

정답 변경: ④ → ①, ④

◇ 문제 7번

▶ 이의제기내용

문제7번: 복수정답 2.5

발문의 괄호에서 총 여비를 일비, 식비, 숙박비, 대중교통비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해설은 별도의 설명없이 지급비 15만원을 총 여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15만원을 포함해서 77만원이 정답이 되려면, 괄호부분을 차라리 없애거나 '...대중교통비, 기타 지원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이의제기내용

상황판단 7번

발문에서는 분명히 (단, 총 여비는 일비, 식비, 숙박비, 대중교통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어본 것은 지급 받는 총액이나 총 비용이 아닌 총 여비 입니다. 발문 어디에도 팀별 별도 15만원이 총 여비에 포함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발문에 의해 팀별 별도 15만원은 총 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답이 77만원이 되려면 총 여비가 아니라 지급해야하는 총 비용 or 총액을 물어봤어야 합니다. 이는 명백한 출제 오류이므로 정답은 ② 62만원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 이의제기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단서에서 총 여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처음의 출제 의도와는 달리 팀별 별도 금액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출제 오류가 맞으며 타당한 이의제기입니다.

최선을 다해 모의고사에 임하셨을텐데,

불편을 드려 무척 송구합니다.

남은 기간 건강하게 컨디션 조절 잘 하시어

올해 꼭 최종합격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답변경여부

정답 변경: ⑤ → ②, ⑤

◇ 문제 21번

▶ 이의제기내용

21번 ㄹ선지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조 1항은 1조 3항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과 임대인간 서로 통지가 없더라도 자동계 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ㄹ선지와 같이 확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의제기 답변

이의제기 답변드립니다.

만약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도로 출제자가 <보기>를 구성한다면,

구체적으로 차임의 연체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입니다.

<보기 ㄹ>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라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언급되지 않은 별도의 가정을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 상황 하에서 법조문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또한 <보기 ㄹ>에서의 "본다" 역시 확정의 의도보다는 해당 근거 조문의 서술어인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이하 '자동계약갱신'이라 한다)으로 본다."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따라서 <보기 ㄹ>은 옳은 보기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럼, 남은 기간 동안 건강하게 좋은 컨디션으로 임하시어

올해 꼭 최종합격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답변경여부

정답 변경 없음

◇ 문제 22번

▶ 이의제기내용

22번 선지 1번에서 A의 이사가 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법조문 2조에 따르면 단순히 '이사가 될 수 없다'고만 되어있지, '자산관리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는 것인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의제기 답변

이의제기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의 근거가 되는 제2조에는 어느 회사의 이사인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1조, 제3조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면 제2조의 내용 또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에 관한 내용이라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판단을 하여 제2조의 내용이 자산관리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할 경우, 제2조 제2항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산관리회사에서 보수를 지급받고 있으면 이사가 되지 못하는데, 이사가 되면 보수를 지급받게 되는 상황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자산관리회사에서 보수를 지급받는자는 자산관리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하고 이사가 되도 마찬가지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다면, 자산관리회사의 이사는 무보수로 이사직을 수행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2조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는 자산관리회사의 이해관계자이면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가 되면 안된다는 것을 규정한 법조문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제시한 것이 제2조라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판단입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제2조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내용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답변경여부

정답 변경 없음